

71年レルの方法 るまると 年刊 多三本年の141年13年







2022 학교생활안내

cOntents

학교소개

Introduction

04 학교소개

05 학사일정

06 No.1 한양사이버대학교

08 Today

11 Global University

Education Matters

14 입학

14 등록

15 졸업제도

16 수업, 시험, 성적평가

18 전공제도

19 이수학점표

20 편입생 학점 인정

20 수료제도

21 자격증

30 수강제도

33 학적변동

Life Guide

38 학내 주요 행사

38 증명서 발급

40 장학제도

41 학자금대출

42 창업지원 안내

42 병무 안내

43 도서관 이용 안내

44 한양의료원 이용 안내

44 포상과 징계

45 학생준칙

46 학생회

50 동아리

51 교내전화번호

학교소개



한양정신

나라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한양의 정신,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한양학원 건학이념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근면, 정직, 겸손, 봉사할 수 있는 인간형성을 도모하고, 숭고한 학문정신을 드높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겨레, 나아가 인류를 위해 이바지 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기르는데 있다.

>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교육



학문탐구 (지식, 지혜)

교육이념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교육목적

"열린 고등교육을 통한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열린 고등교육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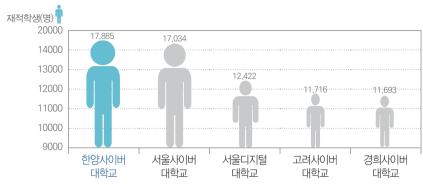
교육목표

-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근면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교양인을 기른다.
-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기른다.
-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인을 기른다.
-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인을 기른다.
-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봉사인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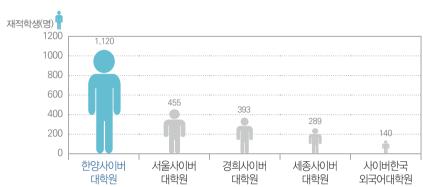
학사일정

H	7171	OOL	IIIO
년도	기간	요일	내용 2022 4천기 중찬 보찬 시점
	1/4 ~ 1/28 1/10 ~ 1/21	화~금	2022-1학기 휴학, 복학 신청 2022-1학기 전과, 재입학 신청
		월~금	2022-1억기 신과, 세합역 신성 2022-1학기 학점교류신청
	1/12 ~ 1/14	수~금	2021 겨울계절학기 시험
	1/15 ~ 1/16	토~일	<u> </u>
	1/17 ~ 1/21	월~금	2022-1학기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포기, 전환
	1/20 ~ 1/21	목~금 월~금	2021 겨울계절학기 성적열람 및 재확인 신청
	1/24 ~ 1/28		2022년 2월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
	2/10 ~ 2/16	목~수	2022-1학기 신편입생,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2/19 2/26	토	2022년 2월 학위수여식 2022-1학기 입학식
	2/28	월	
			2022-1학기 개강
	3/7 ~ 3/10	월~목	2022-1학기 수강신청 정정
	3/29	화	2022-1학기 개강 후 30일
	4/11 ~ 4/13	월~수	2022-1학기 수강포기 신청
	4/16 ~ 4/25	토~월	2022-1학기 중간고사
	4/28	목	2022-1학기 개강 후 60일
	5/25 ~ 6/21	수~화	2022-1학기 강의평가/콘텐츠만족도조사
	5/28	토	2022-1학기 개강 후 90일
	5/30 ~ 6/2	월~목	2022-1학기 학점포기 신청
	6/1 ~ 7/12	수~화	2022-2학기 신 ·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
	6/4 ~ 6/13	토~월 화~목	2022-1학기 기말고사
	6/14 ~ 6/16		2022 여름계절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6/20 ~ 2023 /2/12	월~일	2022-1학기 수강과목 복습
	6/20 ~ 8/26	월~금	2022 여름방학
	6/20 ~ 7/17	월~일	2022 여름계절학기
	6/21 ~ 6/23	화~목	2022-1학기 성적열람 및 재확인신청
2022	6/29	수	2022 여름계절학기 개강 후 1/3
	7/3	일	2022 여름계절학기 개강 후 1/2
	7/5 ~ 7/29	화~금	2022-2학기 휴학, 복학 신청
	7/11 ~ 7/22	월~금	2022-2학기 전과, 재입학 신청
	7/13 ~ 7/15	수~금	2022-2학기 학점교류신청
	7/14 ~ 7/20	목~수	2022-2학기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포기, 전환
	7/16 ~ 7/17	토~일	2022 여름계절학기 시험
	7/21 ~ 7/22	목~금	2022 여름계절학기 성적열람 및 재확인신청
	7/25 ~ 7/29	월~금	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
	8/11 ~ 8/17	목~수	2022-2학기 신편입생,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8/20	토	2022년 8월 학위수여식
	8/29	월	2022-2학기 개강
	9/5 ~ 9/7	월~수	2022-2학기 수강신청 정정
	9/27	화	2022-2학기 개강 후 30일
	10/11 ~ 10/13	화~목	2022-2학기 수강포기 신청
	10/15 ~ 10/24	토~월	2022-2학기 중간고사
	10/27	목	2022-2학기 개강 후 60일
	11/23 ~ 12/20	수~화	2022-2학기 강의평가/콘텐츠만족도조사
	11/26	토	2022-2학기 개강 후 90일
	11/28 ~ 11/30	월~수	2022-2학기 학점포기 신청
	12/1	목	2023-1학기 신 ·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
	12/3 ~ 12/12	토~월	2022-2학기 기말고사
	12/13 ~ 12/15	화~목	2022 겨울계절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12/19 ~ 2023/8/13	월~일	2022-2학기 수강과목 복습
	12/19 ~ 2023/2/24	월~금	2022 겨울방학
	12/19 ~ 2023/1/15	월~일	2022 겨울계절학기
	12/20 ~ 12/22	화~목	2022-2학기 성적열람 및 재확인신청
	12/28	수	2022 겨울계절학기 개강 후 1/3
	1/1	일	2022 겨울계절학기 개강 후 1/2
	1/3 ~ 1/27	화~금	2023-1학기 휴학, 복학 신청
	1/9 ~ 1/20	월~금	2023-1학기 전과, 재입학 신청
	1/11 ~ 1/13	수~금	2023-1학기 학점교류신청
0000	1/12 ~ 1/18	목~수	2023-1학기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포기, 전환
2023	1/14 ~ 1/15	토~일	2022 겨울계절학기 시험
	1/19 ~ 1/20	목~금	2022 겨울계절학기 성적열람 및 재확인신청
	1/24 ~ 1/27	화~금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
	2/9 ~ 2/15	목~수	2023-1학기 신 · 편입생,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2/18	토	2023년 2월 학위수여식
	2/25	토	2023-1학기 입학식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원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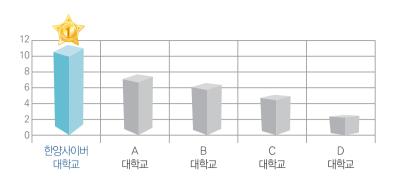
한양사이버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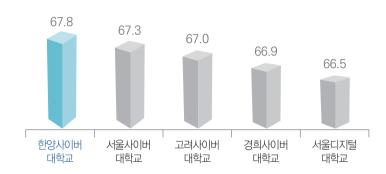
외부기관 수상 실적

- ☑ 2006~2021년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6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은 브랜드스탁이 연세대학교 B&B 마케팅연구센터와 공동개발한 KEB(Korea Educational Brand Index) 모델을 바탕으로 각 교육 부문별 1위 브랜드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 부문 브랜드 인증제도
- 2006~2019년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14년 연속 수상 중알일보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실시한 '올해의 하이스트 브랜드(Highest Brand)' 가치평가 조사에서 대상 수상
-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SQI) 사이버대학교 1위총 15회 선정(2021)
- 2021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사이버대학부문(9년 연속)
- ☑ 2021 국가브랜드대상 (11년 연속)
- 2019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인재양성부문 수상(중앙일보)

KERIS선정 원격대학 우수 컨텐츠 총 11과목, 사이버대학교 중 최다 선정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 대학 15회 선정





1만여 명의 휴먼 네트워크 구성 각계 CEO 600여 명,
 삼성계열사 임직원 600여 명,
 LG계열사 임직원 200여 명,
 금융업 종사자 450여 명 등
 1만 재학생 대부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



명문대학원 진학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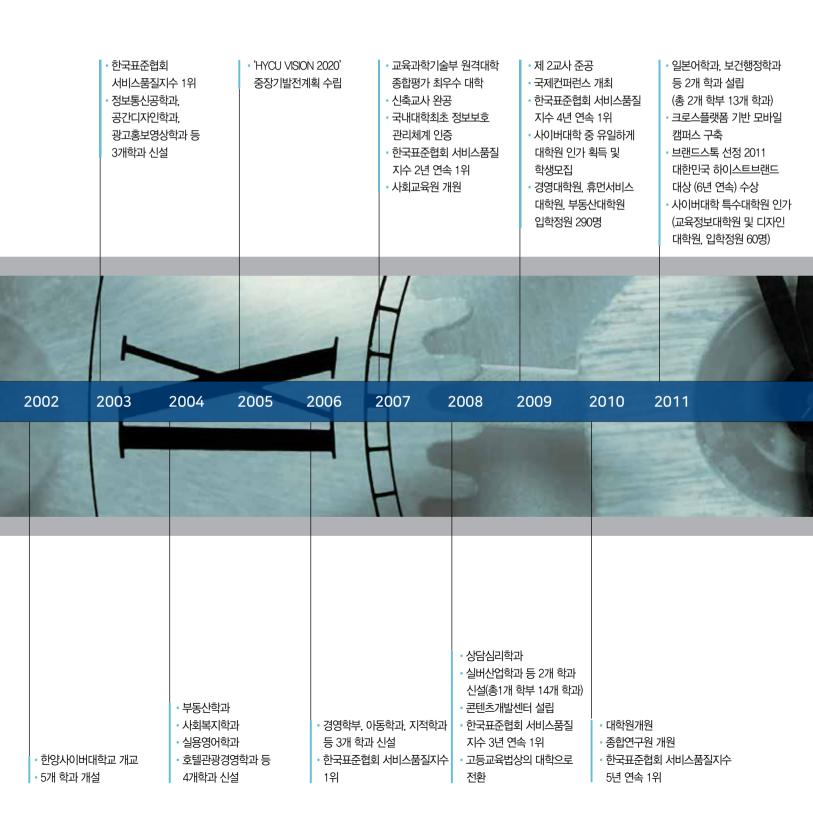
• 2021년 37,825명 졸업생 중 약 9%인 3,346명 대학원 진학 (2021, 8월 기준)



한양대학교 362명	10.8%
한양사이버대학교 294명	8.8%
홍익대학교 217명	6.5%
단국대학교 128명	3.8%
성균관대학교 128명	3.8%
건국대학교 116명	3.5%
중앙대학교 110명	3.3%
국민대학교 93명	2.8%
동국대학교 91명	2.7%
숭실대학교 78명	2.3%
경희대학교 77명	2.3%
숙명여자대학교 72명	2,2%
고려대학교 71명	2.1%
인하대학교 71명	2.1%
한국외국어대학교 70명	2.1%
연세대학교 62명	1.9%
이화여자대학교 61명	1.8%
가천대학교 60명	1.8%
명지대학교 57명	1.7%
세종대학교 55명	1.6%
서강대학교 54명	1.6%
광운대학교 52명	1.6%
기타대학교 967명	28.9%

Today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오늘



사랑의 실천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숭고한 학문정신과 인간애가 조화된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 청소년학과, 경제금융학과
 2개 학과 신설
 (총 3개 학부, 15개 학과)
 제13회 대하미국 디지털
- 제13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8년 연속수상)
- 2013년 교육부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지원 사업 선정
-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디자인계열 등 3대 계열로 학과편제 개편
- 제17회 2015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 제15회 2015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KS-SQI) 1위
- 제5회 2015 고객 사랑 브랜드 대상
-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 · 공학계열 내 디지털건축도시 공학과 신설
- 인문사회계열 내 부동산학과 신설 (총 8개학부, 24개학과, 12개 전공)
- 2017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위 (5년연속)
- · 2017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2년 연속수상)
- 2017 국가 브랜드대상 (7년 연속수상)

- 공학계열 내 응용소프트웨어 학과 신설(총 11개 학부, 39개 학과(전공))
- 201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위 (7년 연속)
- 2019 국가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
- 2019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
- 2019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수상

- 교육혁신센터 설치
- 성폭력상담소 설치
- 2021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위 (9년 연속)
- 2021 국가브랜드대상 (11년 연속 수상)
- 2021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6년 연속)
- 2021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교육콘텐츠 부문 우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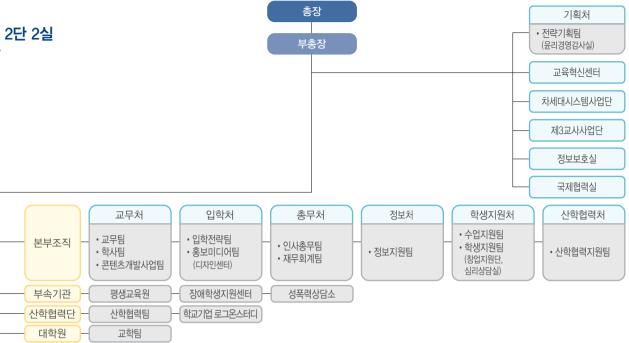


- 미술치료학과 1개 학과 설립 (총 3개 학부, 13개 학과)
- · 개교 10주년 행사 개최
- 자동차T융합공학과, 해킹보안학과, 법학과 3개 학과 신설
 (총 4개학부, 17개학과)
- 2014년 교육부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운영 특성화지원 사업 선정
- 공학계열 내 기계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 보호공학부 및 인문사회계열 내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등 4개 학부 신설(총 9개 학부, 22개 학과, 14개 전공)
- 2016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위 (4년연속)
- 2016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K-CSBI)
- 2016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1년 연속수상)

- 올해의 브랜드대상 6년 연속 선정
-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3년 연속 수상)
- 한양사이버대학교—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업무교류 협약 체결
-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수주('4C 인재를 육성 하는 코딩강사 양성과정')
- 한국웹접근성 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2018 국가브랜드대상 (8년 연속 수상)
- 2018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1위 (6년 연속 수상)

- 창의융합계열 군경상담학과 신설 (총 11개 학부, 40개 학과(전공))
- 산학협력단 설치
- 2020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8년 연속수상)
- 2020 국가브랜드대상(10년 연속수상)
- 2020 대한민국 교육브랜드대상 (15년 연속수상)
-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인가 (미래융합공학대학원 입학정원 90명)
- 차세대시스템 도입







제 1교사 〈연면적: 3,506,81㎡〉

6F 교육미디어제작센터

5F 교수연구실, 교육미디어제작센터

4F 교수연구실

3F 행정센터, 화상세미나실

2F 총장/부총장실, 강의실

1F 입학처, 행정센터

제 2교사 〈연면적: 6,792,30㎡〉

7F 교수연구실

6F 교수연구실

5F 교수연구실, 행정센터

4F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3F 행정센터

2F 행정센터

1F 학생복지시설

B1 대강의실

대학 11개 학부 40개 학과(전공)

		기계제어공학과			부동산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채[융합공학과			사회복지학과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사회과학부	실버산업학과
	저기저지트시고하다	전기전자공학과			아동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플랫폼교육공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군경상담학과
	컴퓨터 · 소프트웨어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심리상담학부	미술치료학과
		해킹보안학과	창의	24024T	상담심리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 · AI 비즈니스학과	융합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창의		글로벌경영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융합		마케팅학과		국제한이군외역구	일본어학과
		생산 물류유통 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인사조직 · 전략벤처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재무 · 회계 · 세무학과		디자인학부	리빙디자인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오늘한당되걱성성역구	호텔외식경영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학전공
	사회과학부	광고미디어학과		공유전공학부	군경사이버보안전공
	시지지식구	법 · 공무행정학과		(*부 · 복수 전공 허용)	산업공학전공
		보건행정학과			심리학전공
					<u> </u>

6개 대학원 14개 전공

924개의 다양한 콘텐츠

미래		7404	Marketing MBA Finance / Accounting MBA	휴먼	아동가족	부동산 대학원	부동산
	기계IT융합공학 도시건축공학	경영 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 MBA IT MBA	서비스	상담 및 임상심리 경찰법무	교육정보대학원	교육공학
대학원			광고미디어 MBA	대학원	OEBT	디자인 대학원	디자인

구분		디네즘나이			
계열	공학	인문사회	디자인	교양	대학원
운영콘텐츠수	157	518	66	37	146



강의개발관리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강의 서비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강의개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강의 콘텐츠의 개발 및 품질관리를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체계는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교육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검증받은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일구어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의 관리 · 운영을 맡고 있는 실무 담당자 모두 교육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교육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양질의 강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기업 및 기관 378개와 산학협력 관계 구축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KT, GS, CJ, 롯데, SK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을 비롯, 서울시청 및 육·해·공군, 농협, 국민연금공단 등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378개 기업 및 기관과 위탁교육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 기관의 고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HANYANG CYBER UNIVERSITY

EDUCATION MATTERS

한양사이버대학교 <u>하</u>사안나

입 학

본교 입학 시기는 매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 내 납입금 일체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각종 제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분과 함께 수강 자격을 얻는다.

- 1. 입학허가는 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하여 매학기 개시일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2. 신 · 편입생 입학허가는 매년 전기(1학기), 후기(2학기)로 두 번 나누어 할 수 있다.
 - 가. 신 · 편입생 모집은 계열별로 모집한다.
 - 나. 신입학(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
- 3. 본교 수험생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한 후 대학별 고사(학업수행검사)에 응시해야 한다.
 - 가. 입학원서(On-Line)
 - 나 증빙서류
 - 다. 제출된 증빙 서류와 최소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4. 입학전형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내용에 의한다.
 - 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백분위 점수+학업수행검사 원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및 공지

- 나, 동점자 처리 기준 원점수
 - 1) 학업수행검사
 -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5. 일반편입학은 2학년,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자격 및 편입 인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국내외 전문 (2, 3년제)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처벌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제외)

나 편입인원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다. 학사편입학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되, 정원 외로 선발한다.
-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재입학 포함)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증빙서류 위 ·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나. 입학시험 부정행위자
 - 다. 전형별 지원자격 미달 및 부적격자
 - 라. 미등록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

등록

등록이라 함은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생, 신·편입생)가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금액

가. 수업료: 1학점당 80,000원 (학점수×80,000원, 매학기 납부) 〈예시〉

신청학점	수업료					
12학점	960,000원					
 15학점	1,200,000원					
 18학점	1,440,000원					

※ 단, 장학금액 선공제로 인하여 수업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등록기간

재학생의 등록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다. (학기개시일 전 일정기간 지정)

가. 1학기 등록기간: 2월 중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나. 2학기 등록기간: 8월 중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3. 등록절차

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신 · 편입생

- 1) 기본등록금 납부(입학금+12학점 해당 수업료)
- 2) 수강신청 후 추가등록금 납부(12학점 초과 시)

〈예시〉

기본등록금	추가등록금		
	12학점 신청시 0원		
수업료 : 960,000원	15학점 신청시 240,000원		
	18학점 신청시 480,000원		

4. 납부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고지서납부 중 택일하여 납부한다.

졸업제도

1. 졸업기준

졸업사정이란, 졸업대상자가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하나의 졸업기준이라도 미충족될 시에는 졸업이 불가하다. 단, 학과별로 조기졸업자를 위해 졸업 기준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각 학과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단일전공졸업 (학위 1개)	주전공 + 부전공 졸업(학위 1개)	주전공 + 복수전공 졸업(학위 2개)			
단일 전공 기준	 총 140학점 이상 취득 이수구분별 최소 기준(전공 47학점, 교양 27학점)이상 취득 전학년 평균평점 1.50 이상 각 학과별 졸업과목(논문/전시회/프로젝트 등) 이수 참고) 2021-2학기 포함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26년 2월 졸업 까지 2회 수강으로 졸업요건 충족 유예 (단, 미이수로 졸업요건 충족 시 성적증명서에 (incomplete) 표시됨) 최소 6학기 이상 이수(신입생 기준임) 					
부전공 기준		부전공학과의 전공 학점 18학점 이상 취득				
복수 전공 기준			복수전공학과의 전 공학점 36학점 이상 취득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조기졸업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 최대 1년까지 학업기 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졸업기준 과 동일하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1) 조기졸업 신청기간 당시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 2) 조기졸업을 신청했으나 졸업 사정에서 탈락 또는 조기졸업 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이 신청한 경우 조기졸업 신청 내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 3)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기 졸업이 되지 않는다.

나. 조기졸업 신청절차

졸업자가진단

조기졸업 신청 기간 확인(신청기간은 별도공지)

'한사대로〉신청〉조기졸업신청' 메뉴

해당학기 졸업사정에 포함됨(졸업여부 결정)

다. 조기졸업 신청기간

- 1) 매 학기 졸업식 2~3주 전에 있을 예정이며, 학사일정을 참고 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2) 정확한 기간은 별도 공지할 수 있다.

3. 졸업연기

가. 졸업연기 신청자격

- 1) 4년(8학기) 이상 이수하고 주전공의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또는 부/복수전공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 2) 그 외 기타사유로 졸업을 연기할 수 없다.

나 졸업연기 신청절차

졸업자가진단

졸업연기 신청기간 확인(신청기간은 별도공지)

'한사대로 〉 신청 〉 졸업연기신청' 메뉴

해당학기 졸업사정에서 제외됨

다. 졸업연기 신청기간

- 1) 매 학기 졸업식 2~3주 전에 있을 예정이며, 학사일정을 참고 하도록 한다.
- 2) 정확한 기간은 별도 공지할 수 있다.

수 업

1. 수업구성

- 매주(월) 0시(개강일: 10시) 과목당 1개 차시 강의 오픈*얼리버드 학습제도 시행: 2주차부터 전(前)주 금요일 0시에 사전오픈(일부 강의 제외 얼리버드 학습 시에도 출석 인정)
- 1~15차시로 구성(8, 15차시는 중간 · 기말고사 기간)
- 1개 차시 강의 분량 : 약 75 ~ 90분 내외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기말까지 반복 수강(복습) 가능
- 모바일 기기로 강의 영상 수강 가능

2. 출석

- 개인범용공인인증서 출석 의무화 시행(교육부 고시 제 2008-93호): 공인인증, 카카오인증, QR인증)
- 중간 · 기말고사를 제외한 과목별 13주차 수업 중 3/4 이상 수강 필수, 3/4 미만일 경우 기타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자동 'F학점(0 점)' 처리(예: 13주차 강의의 경우 10주차 이상 수강해야 출석 점 수와 학점 부여)
- 강의 오픈 후 2주 이내 강의시간의 50% 이상 수강해야 정상 출석 인정, 2주 이후 수강 시 지각 감점처리, 미수강 시 결석 처리

▮시 험

1. 시험유형

- 가. 실시간 온라인 시험 : 과목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식
 - 시험과목 및 시간: 개강 후 3주차 중 공지
 - 시험 서약서 제출 후 응시 가능
- 나. 과제형(Report) 시험: 강의콘텐츠 또는 과제 및 평가메뉴에 출제된 내용을 확인한 후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정해진기한까지 첨부파일로 등록(제출)하는 방식

다. 기타시험: 과목별 교/강사의 강의운영방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퀴즈, 토론, 과제형 시험 등이 개설 운영될 수 있으며 성적에도 반영 될 수 있다.

2. 시험기간 및 시간

- 가, 시험 기간 : 중간고사(8주차), 기말고사(15주차)
- ※ 실시간 온라인 시험 과목 수에 따라 중간고사(7주차 토요일부터), 기말고사(14주차 토요일부터)에 시작할 수 있음
- 나. 시험 시간 : 평일 오후 8시 ~ 11시 까지 주말(공휴일) 오후 3시 ~ 11시 까지

성적평가

1. 성적평가기준

- 가. 매학기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 제물 및 수업참여도 등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평가항목으로 종합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표시된다.
- 나.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75% 이상(15주차 기준으로 11차시 이상) 출석해야 성적이 부여된다.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후에 입대휴학 또는 병가휴학한 경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 주하고, 휴학일 이전의 성적((중간고사, 과제, 강의참여실적 등)을 평가시 반영한다.
- 다.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등급	P/F 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P/F 평가

2. 성적평가방법

가. 등급평가

- 1) 절대평가: 학업성과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2) 상대평가: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방식
- 만약 50명 학생이 0점부터 59점까지 전원이 60점 미만 점수를 취득한 과목의 경우, 절대평기를 한다면 모두 F학점이 되지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59점 취득학생이 최고 A+로 상향조정되면서 F까지 비율에 따라 성적 분포가 이루어진다. 단, 조정 전 취득점수가 10점 미만일 경우 상대평가와 무관하게 F처리되다

나. P/F평가

교수가 정한 기준 점수를 넘은 경우 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평균 평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성적 관련 용어 설명

가. 취득점수(백분율)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100점 만점 기준)

나. 백분율 평균

취득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학점수로 곱한 값의 총합의 평균

다. 성적(등급)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 (A+, A, B+, B, C+, C, D+, D, F)

라. 평점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마. 총점

모든 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

바. 평균평점

총점을 총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

〈예〉 5과목, 총 15학점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과목명	취득 점수	백분율 평균	성적 (등급)	평점	학점수	총점	평균 평점
말과글	100	100x3=300	A ⁺	4.5	3학점	4.5x3=13.5	
실용영어	89	89x3=267	B⁺	3,5	3학점	3.5x3=10.5	
경영수학	71	71x3=213	С	2.0	3학점	2.0x3=6.0	34.5/
사이버 윤리	65	65x3=195	D	1.5	3학점	1.5x3=4.5	15 학점
멀티미디어 개론	40	40x3=120	F	0,0	3학점	0,0x3=0	
계	109	95/15=73				34,5	2,3

4. 등급 및 평점기준

취득점수(백분율)	성적(등급)	평점
95점 이상	A ⁺	4.5
90점 이상 ~ 95점 미만	А	4.0
85점 이상 ~ 90점 미만	B ⁺	3.5
80점 이상 ~ 85점 미만	В	3.0
75점 이상 ~ 80점 미만	C+	2,5
70점 이상 ~ 75점 미만	С	2,0
	D ⁺	1.5
	D	1.0
 60점 미만	F	0

[※] 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

5. 학사경고

가. 대상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

- 나. 이수학년/학기 기준으로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할 수 있다.
- 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라도 수혜자격을 잃게 된다.

6. 석차

- 가. 성적에 따른 학과별 학년별 석차는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정해 진다.
- 나.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이수학점 수가 많은 학생이 상위석차가 된다.
- 다. 평균평점과 이수학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각 과목의 취득점수의 합계가 높은 학생을 상위석차로 한다.
- 라. 학기별로 지급되는 성적장학금은 석차순으로 지급된다.

7. 성적정정 및 취소

- 가.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성적재확인신청기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교강사가 재확인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재확인신청 기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다. 성적재확인신청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이 불가하다. 단, 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 정될 때에는 성적재확인신청기간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은 석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기 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 되었을 때는 취소된다.

전공제도

부전공. 복수전공 신청 및 포기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 별도의 기간을 두어 접수를 받는다.

⇒ '한사대로 〉 신청 〉 부복전공신청' 메뉴

1. 부전공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본인 소속학과 외의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절차

- 1) 평균평점 B0(3.0) 이상이어야 함.
- 2) 부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 3) 해당 부전공 학과장과 부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매 학기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함)

나 학점이수

- 1) 부전공학과의 전공학점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2) 주전공과 과목중복은 안됨.
- 3)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평균평점이 CO(2.0) 이상이어야 함.

다 학위수여

- 1) 주전공과 부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 부전공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졸업 시 주전공 학위와 부전공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을 수여받게 됨.

라. 부전공 이수시 주의사항

- 1) 복수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2) 부전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전공 이수요건에 해당되어도 부전공 심사를 하지 않음.
- 3) 부전공 학과에서 특정 교과목을 부전공 필수로 지정할 수 있음.
- 4) 부전공 포기 또는 심사에서 불합격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 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됨.
- 5) 부전공 신청자는 주전공의 졸업기준 충족 후, 부전공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고, 2년이 초과되는 경우 부전공은 취소됨.
- 6) 부전공 포기 및 전환신청(부전공 → 복수전공)은 1회로 제한됨.
- 7) 공유전공(산업공학전공/경영학전공/심리학전공/군경사이버 보안전공)은 부전공으로 가능함.
 - ※ 부전공 불가학과는 신청 기간에 공지함

2. 복수전공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본인 소속학과 외의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위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학위와 함께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가. 신청자격 및 절차

- 1) 평균평점 B0(3,0) 이상이어야 함.
- 2)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 3)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과 부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매 학기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학)

나. 학점이수

- 1) 복수전공학과의 전공 36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 2) 주전공과 21학점 이내에서 중복학점을 인정함.
- 3)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평균평점이 CO(2.0)이상이어 야 함.

다. 학위수여

- 1)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 복수전공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졸업 시 주전공 학위와 복수전공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을 수 여받게 됨.

라. 복수전공 이수 시 주의사항

- 1)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2) 복수전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수전공 이수요건에 해당되어 도 복수전공 심사를 하지 않음.
- 3) 복수전공 학과에서 특정 교과목을 복수전공 필수로 지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학과, 군경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디자인학부 (8개 학과)는 해당 학과 졸업과목 필수로 지정
 - ※ 디자인학부는 2023.2 졸업부터 적용
 - ※ 사회복지학과는 2024.2 졸업부터 적용
- 4) 복수전공 포기 또는 심사에서 불합격 시, 복수전공으로 취득 한 학점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됨.
- 5) 복수전공 신청자는 주전공의 졸업기준 충족 후, 복수전공 소 정의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 기할 수 있고, 2년이 초과되는 경우 복수전공은 취소됨.
- 6) 복수전공 포기 및 전환신청(복수전공→부전공)은 1회로 제한됨.
- 7) 공유전공(산업공학전공/경영학전공/심리학전공/군경사이버 보안전공)은 복수전공으로 가능함. 졸업 시 제1전공으로 변경 가능함.
 - ※ 복수전공 불가학과는 신청 기간에 공지함

이수학점표

이수학점표란 졸업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각 이수구분별 최소 졸업기준 학점을 의미한다. 입학구분별, 부/복수전공 여부별 취득학점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1. 전공별 이수학점표

가. 단일전공 졸업대상자

이수 구분	이수 학점	비고
교양	27학점 이상 이수	편입생은
전공	47학점 이상 이수	전적 대학
기타학점(일반선택 포함)	_	인정학점
총 취득학점 합계	140	포함

- 이 위 표에서 공란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임.
- 위 표에서 기타학점은 타 학과의 전공학점 즉, 일반선택(일선)을 포함하고, 졸업사정시 전체 140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임.

나. 주전공 + 부전공 졸업대상자

구분	이수 구분	이수 학점
주전공	단일전공 졸업대상자의 졸업 기준과 동일	단일전공 기준
부전공	부전공 학과의 전공학점	18학점
총 취득학점 합계		140학점

- 부전공자는 단일전공에서 140학점과 부전공 학점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님, 즉 편입생의 경우 단일전공에서 140학점과 부전공 18학점을 별도로 취득하여 총 158학점(140학점+18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
- 부전공자는 단일전공의 필수 취득학점인 교양소계 27학점, 전 공소계 47학점을 취득하고 나머지 기타학점 66학점. 즉, 140학 점-(27학점+47학점) 내에서 부전공 18학점을 취득하면 됨.

다. 주전공 + 복수전공 졸업대상자

구분	이수 구분	이수 학점	비고
주전공	단일전공 졸업대상자의 졸업 기준과 동일	단일전공 기준	•복수전공은 주전
복수 전공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	36학점	공과 21학점 내에서 중복학점 인정됨
총 취득학점 합계		140학점	

- 복수전공자는 단일전공에서 140학점과 복수전공 학점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님.
 - 즉 3학년 편입생의 경우 단일전공에서 140학점과 복수전공 36 학점을 별도로 취득하여 총 176학점(140학점+36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
- 복수전공자는 단일전공의 필수 취득학점인 교양소계 27학점, 전 공소계 47학점을 취득하고 나머지 기타학점 66학점. 즉, 140학 점-(27학점+47학점) 내에서 복수전공 36학점을 취득하면 됨.

2. 이수구분 종류

한양사이버대학교 과목 이수구분은 다음과 같이 총 4개로 구분된다.

가 기초교양

대학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양 교과목

나. 영역교양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에 앞서 폭넓은 지식을 쌓기 위한 교과목

다. 전공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전공 교과목

라 일반선택(일선)

본인의 소속학과가 아닌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 반선택 학점이 됨.

3. 중복학점

중복학점이란, 주전공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에 동시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생기는 학점이다.

《예》 주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으로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21학점 까지만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으로 중복인정한다.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은 주전공의 '전공'으로만인정되며 복수전공의 '전공'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단, 부전공은 중복인정 안됨)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편입생 학점 인정

1. 인정기준

한양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편입한 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가.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받음.
- 나. 전적대학의 전공분야와 편입한 학과의 전공분야에 따라, 교양선 택, 전공선택, 그리고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됨.
- 다. 과목별 성적은 인정받지 않으며, 과목구분별 학점수료로만 인정됨.

2. 인정학점표

편입학년	저고비아		총인정학점		
편합역인	전공분야	교양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공인정역점
	동일전공	18	12	5	
2학년	유사전공	24	6	5	35학점
	기타전공	24	0	11	
	동일전공	36	24	10	
3학년	유사전공	48	12	10	70학점
	기타전공	48	0	22	

수료제도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수료인정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칙 제 44조에 따라서, 수료로 인정한다. 수료는 인정학년의 등록차수와 각학년별로 35학점 이상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한다. 편입, 전과 등의 학적 변동 시 수료인정 학점표에 의하여 수료인정 학년을 따른다.

2. 수료 인정 학점표

수료인정 학년	이수학점	등록차수
1학년	35학점 이상	2학기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4학기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	6학기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	8학기 이상

〈예〉 재학생

학점이수현황				이수
	등록차수		학년	학년
3회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계절학기	70학점	2	1
4회	4회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2	2
5회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93학점	3	2
7회	7회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4학년 1학기		4	3

- 등록차수는 정규학기(1학기, 2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 는 정규학기 때 미 이수한 학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 에 이수학점은 가산되나 등록차수로 가산되지는 않음.
- 편입학이나 전과는 이수학년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므로, 편 입학 및 전과 등을 계획할 때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함.

자격증

한양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사

한양사이버대학교 플랫폼교육공학과는 현재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필수 이수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한다)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평생 교육 기관이란 각종 사회단체(청소년, 여성, 노인, 기업, 방송, 언론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평생교육사의 개념

- 가)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사회교육지도자/성인교 육자/사회교육종사자/교육간사/스탭/교육실무자/프로그 래머/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 나)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 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시행 된 평생교육 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바뀜.

다)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24조〉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 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 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평생교육사의 역할

-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 그래머로서의 역할
- 나)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는 운영자로 서의 역할
- 다)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라) 학습지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마)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 자로서의 역할 수행
- 바)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

3)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향후 전망

가) 현직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 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이 완료되어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현 직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교육사 가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운영관리가 더 욱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이 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종사자를 위한 평생교 육사 양성기관에서는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모듈방식으 로 개발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참조하여 평생교육사 양 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과목별 중복을 피하고, 평생교육사의 급별 양성목표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모듈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평생교 육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 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 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 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 위 자격 취득 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나.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2급 취득하기

*2008. 9. 29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등 자격 취득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음.

1) 취득절차

평생교육사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신청

신청서류 심사 및 자격증 발급(졸업학기)

- ※ 참고: 자격증 신청서류 심사 및 자격증 발급이 '졸업학기'에 가능하다고 표기된 것은 신입학 학생 기준임.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학위' + 자격증 관련 과목 10과목 이수 시, 졸업학기 이전에도 신청 가능함.
- 2) 취득학점: 평생교육 관련과목 최소 10과목(30학점) 이상 취득
 - 학과에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하여 인정
 -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은 각각 3학점씩 학습성적은 10 과목 평균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함.

과정	구분	과목명
' ' '	필수 (5과목 15학점)	* 평생교육개론, *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평생교육실습(4주간)
양성 과정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시민교육론, 문지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론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활용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론,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별표 과목이 현재 우리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임.

3) 평생교육실습(필수과목 모두 이수 후)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 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인 평생교육실습과목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2009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경력자 실습면제 없음).

4)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가) 자격증 신청 대상자 :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 중 필수(현 장실습 포함) 및 선택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나) 제출서류 목록

최초 신청시	재발급 신청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실습과목 수강으로 기제출학 생은 해당없음) • 전담경력확인서 1부(구법 적 용자 중 현장실습 면제 해당 자만 제출)	■신청시기: 상시 ■교부시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 ■관련문의 •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 서(☎ 1577-3867) • 팩스: 02-3780-9960 • 이메일: lledu@nile.or.kr

[※]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 부서 또는 플랫폼교육공학과 사무실로 문의 필요.

2. 사회복지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필수이 수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1)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는 1983년 전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1985. 3. 1 사회복지사 업법시행규칙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행하였으며, 1990. 11.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자격증 명의를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9. 1.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업회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 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 사업가로서 문제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 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 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 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 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 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 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함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자 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 고 졸업한 자
-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한 자
-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 수한 자

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사 취득하기

1) 취득절차

자격증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이수 (그 외 '사회복지실천과현장'은 실습선수강과목임)

> 졸업 후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심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 개별송부 (등기우편)

ㅇ 수수료 내역(한국사회복지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 5만원

2) 필수 이수과목

- 가) 자격증 이수구분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해 야 함.
- 나) 교육과정 운영 상 미 개설된 교과목도 있으니 계획 수립 시 유의바람.

	과목명	자격증	본교
	-170	이수구분	이수구분
	사회복지실천과현장	_	전공
1	사회복지개론	필수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_ 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필수	전공
3	사회복지실천론	필수	전공
_ 4	지역사회복지론	필수	전공
_ 5	사회복지행정론	필수	전공
_6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필수	전공
7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전공
8	사회복지조사론	필수	전공
9	사회복지정책론	필수	전공
10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전공
11	사회복지역사	선택	전공
12	자원봉사론	선택	전공
13	사회문제론	선택	전공
14	가 족복 지론	선택	전공
15	노인복지론 선택 전공		전공
16	국제사회복지론	선택	 전공
17	아동복지론	선택	 전공
18	청소년복지론	선택	전공
19	장애인복지론	선택	전공
20	여성복지론	선택	 전공
21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선택	전공
22	다문화사회복지론	선택	저고
22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선택	전공
23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선택	 전공
	3 선택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선택		<u> </u>
24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선택	전공
25	사례관리론	선택	전공
26	학교사회복지론	선택	전공
27	의료사회복지론	선택	전공
28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선택	전공
29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선택	전공
_			

^{*} 모든과목은 사회복지학과 관장 과목임.

3) 자격증

- 가) 자격증 신청 대상 매 학기 졸업자 중 자격증 취득에 필 요한 과목 기준을 모두 이수한 사람 (대학에서는 대행업무 를 하지 않음)
- 나) 신청시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지방협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사회복지실천과현장 과목은 실습 160시간의 선이수 과목임.

HANYANG CYBER UNIVERSITY

4)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사 취득 FAQ

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타 전공 재학생도 취득할 수 있 느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전공 학생이라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취득이 가능함.

- 나) 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학위를 받은 후에 기능함. 따라 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이전에 자격증 교부가 불가능함.
- 다) 이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졸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을 한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한 학점은행제(02–1600–0400), 시간등록제 등을 통해 이수하지 못한교과목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증 교부가 가능함.

라)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자들에게는 평생학습과정에서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음. 평생학습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02—1600—0400)와 시간제등록 등이 있음.

3. 건강가정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필수이수과 목을 개설해놓고 있다.

가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시는 '건강기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시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나.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8) 그 밖에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다. 건강가정사 이수교육

구	분	교과목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u>가족상당(및치료)</u> , 가정(족)생활교육, <u>가족복지론,</u> 가족과 젠더, <u>가족(정)과문화,</u>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u>비영리기관운영관리</u> *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지원봉사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가족(정), 사회복지(개)론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u>이동상</u> 담, 영양상담및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u>부모교육</u> ,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u>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u>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u>집단상담</u> , 가족(정)과지역사회, 여성과교육, 여성과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u>사례관리론</u>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 가) 밑줄 친 과목은 사회복지학과를 포함하여 한양사이버대학교 에 개설된 과목임.
- 나) *표시된 과목은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되어 있음.
 - 1) 비영리기관운영관리 = 사회복지행정론
 - 2) 보육학 = 보육학개론
 - 3) 인간발달 = 발달심리학
 - 4) 상담이론 = 상담이론과실제
 - 5) 연구(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 다) 건강가정현장실습은 필수가 아님.
- 라)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나오는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인증제도로서 자격증이란 증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고 있 으며 개인성적증명서를 통해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기 위한 교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판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쪽으로 취업 을 할 수 있음.
- 마)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기 바람. (https://www.familynet.or.kr/1577–9337)

4.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학교사회 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 가공인전문자격이 되었음)

가. 학교사회복지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외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무 분야이다.

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수련교육 과정

- 수련기관: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수련지도자가 상근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
- 수련지도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수련기관에 상근하는 자
- 1년 이상, 1,0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필평가 및 과제 제출을 통한 수련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 라.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기 바람. (www.kassw.or.kr/02-2267-7942)

5.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의료사회 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 가공인전문자격이 되었음.)

가. 의료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의 여러 실천 현장 가운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사를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말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장 기적, 단기적 질병치료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심 리정서적 문제를 파악하여 그 문제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실천기술을 활용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나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함

- 1) 심리사회적 치료자의 역할
- 2) 서비스 조정자의 역할
- 3) 지원동원자의 역할
- 4) 재활의료와 교정자의 역할

다.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수련교육 과정 및 기간

- 1년 간, 주 20시간 이상, 이론교육은 연간 최소 40시간 이상, 임상수련은 임상영역 최소 960시간 이상 진행. 총 1,000시간 이상 수련 (수련 인증의 최소 기준 기간)
- 수련 이후 수련교육 이수평가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 험(협회 주관) 실시
- 자격시험 이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 마.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기 바람. (www.kamsw.or.kr/0505-987-0909)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공인전문자격이 되었음.)

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기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 담 및 안내를 제공한다.

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 상 수련을 마친 사람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라. 수련교육 과정 및 기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 수련
- 마.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로 문의하기 바람. (www.kamhsw.or.kr/02-702-5638)

7. 보육교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필수이수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가.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 1) 보육교사의 역할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 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 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없이 안심 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 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 보육교사의 자질: 보육교사는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 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 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3)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기준

등급	자격기준(2005년 개정판)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 가족 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 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 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 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한양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 2급 취득하기

1) 취득절차

필수과목 이수 (실습 포함)

졸업 후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 자격증 개별신청 (발급 수수료 발생)

사무국에서 자격심사

사무국에서 자격증 개별송부(등기우편)

- 가)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서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대행 업무를 하지 않음.
- 나) 발급 수수료는 개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용카 드, 인터넷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 * 2006년 ~ 2013년 신·편입생 및 2013학번 편입생, 2014 년 이후 신·편입생, 2017년 이후 신·편입생 적용기준이 상이함

○ 개저 ㅎ 역으아보유번령에 전용을 받으(이하 번령 주요 내용)

이루 (2	005년 호 입학생 005년 학생부터)	 취득 자격증 급수 :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실습시간 : 160시간(4주) 전공(학과)과 상관없이 해당 이수과목과 실습을 마친 자는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총 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014년 학생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적용 받음. (2011.12.8 개정) • 취득자격급수 : 보육교사 2급 • 보육실습시간 : 160시간(4주)(평일만 오전 9시부터 하루 8 시간씩 20일 동안 해야 함) •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이수과목과 실습을 마친 사람은 자격 증 취득 가능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 수해야 함.
_	017년 학생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적용 받음(2016.1.12 개정). • 취득자격급수: 보육교사 2급 • 보육실습시간: 6주 240시간(평일만 오전 9시부터 하루 8 시간씩 30일 동안 해야 함. 학기 중 2회로 나누어 실시할수 있음) •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 • 2016년 신, 편입생부터 이동학과 전공자 및 이동학과 부・복수 전공만 신청 기능 • 대면교육: 9개 교과목, 대면 교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 출석 시험 의무화(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2) 보육실습

- 가) 보육교사 현장실습 기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나)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소지자
- 다)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3) 자격증 신청 방법

가) 자격증 신청 대상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해당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완료한 후 졸업한 자

나) 신청방법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https://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발급 수수료는 개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용 카드, 인터넷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 기타 제출서류는 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으로 등기우 편발송 (자격증수령 전까지 등기번호는 필히 보관)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주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 지원국

- 전화: 1661-5666 (내선2)

4) 한양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 취득 F&Q

가) 보육교사 자격증은 타 전공 재학생도 취득할 수 있는가?

2005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관련 과목을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6주 24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완료하 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014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관련과목을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면서 6주 240시간이상의 현장 실습을 완료하 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016년 신·편입생부터 아동학과 전공자 및 아동학과 부·복수 전공자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개정 대면 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함.

- 나) 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학위를 받은 후에 가능함.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이전에 자격증 교부가 불가능함.
- 다) 실습과목 수강전 선수강 과목이 있는가? 2017학번 이후 기준,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학개론, 영유 이발달, 놀이지도, 보육과정을 모두 수강하신 뒤 4학년 1, 2학기 중에 보육실습 수강신청 가능함.

8.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필수이수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가.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란?

장애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 1)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역할: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의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통합적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장애영유아의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자질: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 교사는 자애로움, 영유이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 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 건강 등의 개인적 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 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3)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기준

구분	자격기준(2015. 7. 1 도입)
	①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한 자 ②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
	합교육) 이수자

※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며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임.

나, 한양사이버대학교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하기

1) 취득절차

필수과목 이수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 자격증 개별신청(발급 수수료 발생)

사무국에서 자격심사

사무국에서 자격증 개별송부(등기우편)

- 가) 장애영유이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자격관리 사무국에서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는 대행 업무를 하지 않음.
- 나) 발급 수수료는 개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용카 드, 인터넷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2) 자격증 신청 방법

- 가) 자격증 신청 대상자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 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나) 신청방법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https://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발급 수수료는 개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용 카드, 인터넷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 기타 제출서류는 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으로 등기우 편발송 (자격증 수령 전까지 등기번호는 필히 보관)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주소: 04303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 전화: 1661-5666 (내선2)

HANYANG CYBER UNIVERSITY

9. 청소년상담사 3급

가.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상담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청소년상담사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나. 응시자격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이동(복지)학분야 졸업(예정)자

다. 응시과목

- 필수과목: 발달심리학,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 당이론. 학습이론
- 선택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택 1
- ※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응시 괴목을 개설해놓고 있다.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자 격증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http://www. youthcounselor. or.kr/ 02,2253-3813(자격연수), http://www.q-net.or.kr/ 1644-8000(원서접수)]으로 문의바람

10 청소년지도사 2급

가 청소년지도사라?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 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 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나. 응시자격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다. 응시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응시 괴목을 개설해놓고 있다.(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자격증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사(http:// yworker.youth.go.kr
 041-620-7786, 041-620-7787(자격연수)http://www.q-net.
 or.kr/site/jidosa) 1644-800(원서접수)]으로 문의바람.

11. 상담심리사 2급

'상담관련 학사 취득자' 상담심리사 2급 취득단계

가 1단계 : 학회 기입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

나, 2단계: 상담 경력 및 과목 이수 충족

- ① 학사학위 취득 후. 2년(24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② 학부 과정 중 과목 이수(상담 3과목, 기초 3과목)

*한국상담심리학회 가입 후 자격시험과 수련을 마치면 부여

♣ 이수과목

- 가) 상담관련과목: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사례실 습,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 담, 아동상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 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 나)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 학, 조사방법론 등

♣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전문가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 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 단은 공지사항 참고)
- 모든 수련내용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단, 학회 입회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다. 3단계: 자격시험 응시/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 ② 상담경력확인서
- 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

★ 공통사항

- 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 리학, 심리검사(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위 서류 이외의 제출서류: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 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라. 4단계: 수련내용 충족

①「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제 7조의 최소수련 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아래(표 2)참고

영역 내용		
99		
접수면접		•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	면접상담	• 5사례, 합 50회기 이상(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상담	수퍼비전	•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	참여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상담	실시	
	수퍼비전	
	검사실시	• 10시례 이상(1시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 10사례 이상
심리 평가	수퍼비전	• 5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예 : K-WAIS, K-WPPSI, K-WSC, KEDWISC, K-ABC) 등.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전단검사, 적성진단
		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 상,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시례 연 구활 동		• 학회 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 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마, 5단계: 자격심사 청구/합격

1차 심사 – 서류심사

2차 심사 - 면접심사

〈자격심사 청구서류〉

-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 ② 상담경력 종합확인서
- ③ 이력서
- ④ 수련수첩
- ⑤ 최종학위증명서
-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사례발표자료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시례별 제출
-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바. 6단계: 자격증 취득

〈 자격증 취득 〉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 *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응시과목을 개설해놓고 있다.

(상담심리학과 교육과정로드맵 참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담심리학회(http://www.krcpa.or.kr), 02)498-8293]로 문의 바람.

12. 임상심리사 2급

가 임상심리시란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 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

나.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다. 취득방법

- 1) 심리학, 또는 임상심리, 상담심리를 졸업하여 임상심리와 관련 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실습생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 시험과목:
 - ① 필기시험과목: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 ② 실기시험과목: 임상실무(시험시간 3시간)
 - *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1년동안 인턴할 수련 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임상심리사에 필요한 조건 중 '임상 심리와 관련 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지'에 해당되 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턴 수련생은 시험과 면접을 통 해 선발되며, 선발된 수련생들은 상담심리학과 교수 지도 하에 임상수련을 하게 됨.)
 - *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 하여 응시과목을 개설해놓고 있다.

(상담심리학과 교육과정로드맵 참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http://www.q-net.or,kr), 1644-8000]으로 문의 바람.

수강제도

1.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다.

가. 수강신청 기간

- 1) 개강 1개월 전 이내로 별도 공지하는 기간에 진행한다.
- 2) 통상 1학기 수강신청은 8월중, 2학기 수강신청은 2월중 진행되다
- 3)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은 6월중,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은 12월 중 진행된다.

나,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메뉴 접속 본교 홈페이지 〉 학사행정 〉 수업 〉 학생 〉 수강신청 메뉴에서 진행한다.

탄력학기 신청 재학기간 중 최대 2개 학기에 한해 학기당 최소 수강신 청학점을 12학점 → 6학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탄력 학기 신청 기간은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신청과목 선택 전 탄력학기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졸업 연 한이 길어지는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신 청해야 한다.

신청과목 선택 개설과목목록의 [구분] 항목을 [나의전공]으로 선택하면 전공과목을, [교양]으로 선택하면 교양과목을, [타전공]으로 선택 후 [학과/전공] 항목을 추가 지정하면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수강하려는 과목을 정한 뒤 [신청]을 클릭한다. 신청 과목 수만큼 [신청]을 클릭하다.

수업계획서 확인 과목 선택 시 수업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다. 과목 개 요 및 목표, 교재 및 참고문헌, 성적 평가기준 및 방 법, 담당교수 소개와 주차별 강의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수강목록 확인

수강목록에 신청과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선택과목 취소 신청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수강목록 에서 [취소]를 클릭한다. [수강확정하기]를 진행하지 않았 다면, 수강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수강확정

수강괴목 선정 완료 후 화면 상단의 [수강확정하기]를 클릭한다. 수강확정 이후에는 과목을 추가/삭제/교체 하는 등의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해 야 한다. 단, 개강 후 정정기간에 특정 괴목을 동일 학 점의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가능하다. 등록금 결제

수강확정 후 등록금을 결제한다. 본교 홈페이지 〉학사 행정 〉 등록 〉 학생 〉 등록금결제 메뉴에서 신용카드, 무 통장입금, 고지서납부 중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내용 확인 수강신청 및 등록금 결제를 완료한 후 본교 홈페이지 〉 학사행정 〉 등록 〉 학생 〉 본인등록금납부확인 메뉴에 서 수강신청 과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한다.

다. 수강신청 학점

1) 수강신청 학점 관련 사항은 교육부 지침 및 본교 학칙을 따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기구분	직전(直前)학기성적	수강신청학점
정규학기	3.5 미만	12~18
ठπथ्य	3.5 이상	12~24
계절학기	최대 9학점 (단, 재학 중 계절학기로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	
주의사항	단,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u>졸업예정</u> 학기	~ 12학점 미만을 수강신정할 수 있음	

- 2) 교양과정과 본인 소속 전공교육과정에서 이수학점표에 근거하여 수강신청해야 한다.
- 3) 졸업학기에는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졸업과목을 필히 이수해 야 한다.

4) 유의사항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경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므로, 정규학기에 24학점을 수강신청하면 다가오는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다.
- 직전학기까지 129학점 이상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취득하면 되므로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 ─ 탄력학기 신청 승인자는 해당 학기에 한해 6~1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현재 학년보다 상위학년 과목도 수강신청 가능하다. 단, 졸업과목은 기이수학점이 116학점 이상일 경우 수강신청 가능하다.
- 타학과 과목도 수강신청 가능하다. 타학과 과목은 이수구분 이 일반선택으로 적용된다.

라. 재수강

1) 재수강이란 학업성취도가 낮은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의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2)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 한 성적에 상관없이 어느 과목이라도 성적상승 재수강이 가능 하다. 단, 교과목이 폐지되어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없다.
- 3) 재수강 기본 원칙 교과목의 학수번호가 동일해야 재수강으로 인정된다.

4) F재수강

F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F학점 취득 과목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재수강시 이수학점 이 추가된다.

5) 재수강 신청 기간

재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재수강 신청 가능하며, 희망 과목이 개설 된다면 계절학기에도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6) 재수강 과목 성적 재수강 과목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영되고 성적 증명서에 표기된다.

과거 학점이 높은 경우 (재수강 후 학점이 낮을 때)	과거 학점이 낮은 경우 (재수강 후 학점이 높을 때)	두개 학점이 같을 경우
과거 학점 인정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인정	과거 학점 인정

7) 재수강 유의사항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을 하게 되면, 과거에 취득한 학점과 현재 신청하는 학점 중 하나가 삭제되므로 졸업학점 계산 시 이를 염두에 두어 총 학점 수 계산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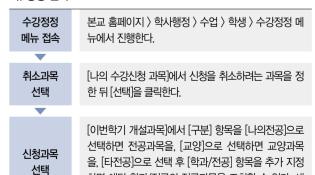
2. 수강신청정정

개강 후 수업을 들어본 뒤, 특정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정정 기간

개강 후 1주일간 수업을 수강한 뒤, 개강 2주차에 약 3일간 진행한다.

나. 정정 절차



하면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새

로 신청하려는 과목을 정한 뒤 [선택]을 클릭한다.

주의사항 확인 수강정정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생성되며 [확인]을 클릭하면 변경이 완료된다. [취소]를 클릭하면 변경이 진행되지 않는다.

정정반영 확인

수강목록에 신청/취소과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정정 유의사항

- 1) 과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취소하는 정정, 학점이 상이한 과 목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이미 신청한 학점과 동일한 학 점수 내에서 특정 과목을 동일한 학점의 다른 과목으로 변 경하는 정정만 가능하다.
- 2) 과목별 1회만 변경 가능하므로 정정 처리된 과목은 더 이상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을 취소하고 정정 전 과목 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 3) 신청인원이 제한된 과목 등 일부 과목은 상황에 따라 정정이 불가할 수 있다.
- 4) 정정 후 변경(삭제)되는 괴목의 강의실에서 진행한 모든 내용 (출석, 글작성, 학습시간 등 학습 관련 정정 전까지 진행한 모 든 활동이력)은 일괄 삭제되고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

3. 수강포기

해당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전에 학점을 미리 포 기하는 것이다. 수강포기 후에도 학기 종강일까지 강의실에 접속하 여 수업은 계속 들을 수 있으나.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매 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 마지막주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신 청한다.

나 수강포기 신청방법

- 1)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 수업 〉 학생 〉 수강포기 메뉴에서 신청한다.
- 2) 포기 후 잔여학점이 최소학점(12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3) 시간제수강생도 수강포기 신청 가능하다. 단, 포기 후 최소 1 과목 이상 잔여 과목이 있어야 한다.
- 4) 타대학(기관) 학점교류생은 신청할 수 없다(한양대/타사이버 대 학점교류생 신청 불가).

다. 수강포기 유의사항

- 1) 수강포기시 등록금(수업료)은 반환되지 않는다.
- 2) 매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 수강포기 신청을 받으므로 중간/기 말고사 응시는 불가하다.
- 3) 수강포기한 과목은 성적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성적표에 기재 되지 않는다.
- 4) 탄력학기 신청자는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6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수강포기 신청 불가하다.
- 5) 직전학기까지 12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최소 1개 과목만 남 기고 수강포기 신청 가능하다.

HANYANG CYBER UNIVERSITY

4. 학점포기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교과목이 폐지 되어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가. 학점포기 신청기간

정규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 마지막주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신 청한다.

나, 학점포기 신청방법

- 1) 본교 홈페이지 〉 학사행정 〉 성적 〉 학생 〉 학점포기신청 메뉴 에서 신청한다.
- 2) 6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인정학기 포함)
- 3) 신청 화면에 학점포기 가능 과목이 제시되며, 가능한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다.
- 4) 학점포기 가능 과목수는 졸업까지 최대 2과목이다.
- 5) 학점포기 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시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다. 학점포기 유의사항

- 1)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된다.
- 2) 학점포기 신청 승인 후 취소는 불가하며, 포기한 학점은 재 인 정(학점포기 취소)되지 않는다.
- 3) 학점포기시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 4) 성적 상승을 위한 학점포기는 불가하며, 성적상승을 희망할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해당과목을 재수강 신청해야 한다.

5. 계절학기

본교는 학생들의 조기졸업과 학점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계절학기 개설과목

정규학기 개설 과목 중 일부 과목 개설이 원칙이며, 수강신청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될 수 있다.

나. 계절학기 운영기간

방학 중 정해진 4주 정도의 기간에 정규학기 기준 3~4주차분의 수업을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단시간 내에 학점을 이 수할 수 있다.

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 1) 수강신청 방법과 학점당 수업료는 정규학기와 동일하다.
- 2)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최대 9학점이며, 재학 중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이다.
- 3)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계절학기 수강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절학기 수강 가능학점 예시

직전 정규학기 수강학점	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	최대이수학점
15학점 이하	9학점 이하	
18학점 이하	6학점 이하	
	24학점 이하	
 21학점	3학점 이하	
 24학점	0학점	

- 5) 계절학기는 재학생 및 시간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가 능 횟수에 제한은 없다.
- 6) 시간제 수강생은 직전 정규학기를 등록하였을 경우 동일과목 재수강으로만 계절학기 수업 수강이 가능하다.
- 7)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 강신청이 취소된다.
- 8) 계절학기에는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가 불가하다.

라. 계절학기 성적처리

- 1) 계절학기 취득성적의 산출 및 인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일반학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성적표에 표기한다.
-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체 취득학점 및 전체 평점, 학 년별 평점 등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정규학기의 성적을 기본으로 하는 장학, 석차, 표창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학점교류

교류수학 협약이 맺어진 타 대학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음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가. 교류대학

본교는 같은 한양학원에 소속된 한양대학교와의 학점교류협약을 통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양대학교의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 신 청하여 이수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울러 한양대학교 재학생들도 학점교류제도를 통해 본교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 신 청하여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신청자격

- 1)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평균평점 1,5(D+) 이상인 학생
- 2) 오프라인수업이 이루어지는 주중 수업시간에 출석이 가능한 학생
- 3) 신청자가 많아 교류대학에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 선착순으로 인원제한을 둘 수 있다.
- 4) 신청자가 학기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점교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 신청기간

학기 전 방학기간 중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한다. 2학기 신청은 7월중, 1학기 신청은 1월중 진행되며 학사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 \rangle 학사행정 \rangle 수업 \rangle 학생 \rangle 학점교류신청 메뉴에 서 신청한다.

마. 수강신청

- 1) 본교 수강신청기간 전 정해진 기간에 별도 부여 받은 한양대 학번으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한다. 본교 과목 수강신청 시 학점교류과목 신청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2) 한 학기에 최대 6학점, 재학 중 총 30학점까지 학점교류 과목 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3) 교류대학이 본교에 배정한 인원만큼 수강신청 가능하나, 사정 에 따라 강좌별 제한을 둘 수 있다.

- 4) 수강신청 후 학점교류 수강취소와 과목추가는 불가하다.
- 5) 수강포기 신청이 가능하며, 포기 후에도 종강일까지 강의 수 강은 가능하다. 단, 성적이 부여되지 않고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바. 수업료납부

학점교류 과목 등록금(수업료)은 본교 과목 수강 학점과 합산하여 계산되는 등록금 총액으로 본교 등록 기간에 납부한다.

사 학적인정

- 1) 한양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은 성적표에 [과목명_학점교류]로 표기된다.
- 2) 성적은 P/F(Pass or Fail)로 인정되어 표기된다.
- 3) 한양대학교에서 정한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본교에서는 교양 으로 인정되므로 부전공, 복수전공의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 는다.
- 4) 학점교류 과목의 학점포기신청은 불가하다.

학적변동

1. 휴학

휴학이라고 함은 재학생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수학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입대휴학
- 병가 또는 가사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 기간 : 1년	-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 기간 : 군복무기간(3년)

- 1)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 학 기간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 2) 휴학신청은 재학 중 총 3회로 제한된다.

나. 휴학절차 및 방법

-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 에 웹상에서 휴학신청서를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2) 입학(신/편입) 첫 학기 이수 후부터 휴학 가능하다.
- 3) 시기에 상관없이 휴학할 수 있는 경우
 - 가) 병가사유: 4주 이상 수업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필요

- 나) 입대사유 : 입대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입영 통지서 사본 제출 필요
- 4) 휴학 신청하는 곳: 한사대로 등교하기 〉학사/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학생 〉 휴학신청

다. 이수학기 성적처리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 가 3/4이하):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 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된다.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상):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할 수 있다. 즉, 해당학기 전체의 3/4 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 리포트 등으로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취득하였더라도 F 학점이 부여된다. (총 13개 차시 수업분량중 10개 차시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성적이 부여된다.)

2. 복학

복학이라고 함은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HANYANG CYBER UNIVERSITY

가. 복학의 종류

정규복학	월반복학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보
복학 (1학기 마치고 휴학한 경우, 2	다 한 학기 앞당겨 복학 (1학기 마치
학기로 복학)	고 휴학한 후 다시 1학기로 복학)

- 1)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 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 복학을 해야 한다.
- 2)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가 된다.
- 3) 복학 신청하는 곳: 한사대로 등교하기 〉학사/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학생 〉 복학신청

4) 월반복학

- 가) 휴학은 기본단위가 1년(2학기로서)이며, 원칙적으로 최소한 1년 후 복학을 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학기를 앞당겨월반 복학할 수 있다. 즉,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다음 해 2학년 2학기에 복학해야 하나 사정에 따라 반학기가 지난 후 1학기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학년은 3학년 1학기로 월반복학하게 된다.
- 나) 월반복학 시 지나친 학기는 4학년 2학기를 마친 후 한 학 기를 더 이수하는 것으로 보충하며, 이 때 2학년 2학기 필 수과목 등은 재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자퇴/제적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부)장 및 총장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아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금 반환 근거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제58조 참조

나. 수업료 반환 기준

신입학생(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이래 기준표 에 따라 반환된다.

〈수업료 반화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해 학기 개강일 전	전액을 반환함
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 단, 휴학생이 휴학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한
- ※ 다음의 경우에는 "휴학학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 가) 휴학생이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 나)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 개시 전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8,14]

- ② 신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 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위의 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 환한다

다. 수업료 반환 계산식 예

- 개강 후 30일까지 반환신청서 접수자: (총수업료) X 5/6
 (예) 18학점 신청자의 반환금 (총수업료 144) X 5/6 = 120만원
- 개강 후 31일 부터 60일까지 반환신청서 접수자: (총수업료)
 × 2/3 (예) 18학점 신청자의 반환금: (총수업료 144만원) × 2/3 = 96만원
- ※ 총수업료는 공제받은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납부액 기준임
-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자퇴 시 수업료 반환금은 현금으로 환불됩니다.

라. 제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미복학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제적)

4. 재입학

재입학이라고 함은 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입학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 전 별도로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한다.

나. 재입학자격 및 모집범위

-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 능하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학 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 복수전공학과로의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다. 재입학심사

- 재입학은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등록차수가 동일한 경우, 전학년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라 재입학절차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기일까지 소정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을 납부해야 한다.

- 재입학자의 학점은 허가된 학년, 학기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만 이 인정된다.

5. 전과

전괴라고 함은 신입생 및 편입생이 입학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전공학과를 옮기는 제도를 말한다.

가. 전과 신청기간

- 매 학년도 해당 학기 개시 전 별도로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한다.
- 전과 신청하는 곳: 한사대로 등교하기 〉 학사/행정 〉 학시행정〉 학적 〉 학생 〉 전과신청

나, 전과 자격 및 모집범위

- 1학년괴정을 수료 (35학점 이상 이수 하고, 본교 수업연한 학기 (8학기) 중 6개 학기 이허를 이수한 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모두 가능하나, 편입생은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2학년 편

- 입생은 4개 학기 이하, 3학년 편입생은 2개 학기 이하를 본교에서 이수한 경우에 신청 가능)
- 본교에 개설된 전학과의 동일 학년으로 모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학과별로 제한을 둘 수 있다.
- 모집인원은 당해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이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전과 심사

- 해당학년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라. 전과 절차

- 전과에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 동일학년으로 등록한다.
- 전과 전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되나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에 따라 이수구분이 변경된다.



HANYANG CYBER UNIVERSITY

L I F E G U I D E

한양사이버대학교 생활안내

학내 주요 행사

1. HYCU Big Festival

본교 빅페스티발은 모든 학우들이 평소에 닦아온 젊음의 지혜와 기상을 마음껏 펼치는 잔치이다. 본 행사는 학·예술제, 민속제, 체육활동 등 푸짐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행당산에 온통 축제분위기와열기를 가득하게 해준다.

2. 체육제전(블루 라이온스컵)

매년 한사인이 평소에 닦아온 젊음의 힘과 기를 겨루는 체육대회를 거행하고 있다. 2005년도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가. 각 학과에서 예선대회를 거친 후 선발된 선수들이 학과 대표선수 로 출전하여 경기를 벌인다.
- 나. 경기 종목은 축구, 농구, 족구, 줄다리기 등이며, 사정에 따라 증가 혹은 축소될 수 있다.

3. HYCU 문화탐방

기존의 해외문화탐방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해외 각지에서의 자유로 운 팀 단위 주제학습을 통해 소통능력, 국제감각, 능동적 자세를 향 상시키고 나아가 격변하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의 계 기 마련을 위해 2010학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양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 가. 단순한 관광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과 연계된 국가와 주제의 선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나. 지원 자격의 경우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3.0 이상, 2학기 이상 수료자(휴학자 불가)

이 증명서 발급

1. 학생증

학생증을 통해 재학기간 중 학생신분증명, 한양대학교 도서관(서울 또는 ERICA) 출입 및 도서대출이 가능하다.

가 모바일 학생증

- ① 설치 및 이용방법
- Play스토어(안드로이드)/APP스토어(iOS)에서 '한사대로' 검색
 후 설치한다.
- APP 실행 후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 메인 화면 상단 목록의 '학생증'을 클릭하여 이용한다. (사진을 미등록한 경우, 반드시 사진 등록 후 사용)

나. 일반 학생증

- ① 발급방법 및 수령
- 학번발급 후 발급신청 가능
- 정상 접수 후 2주에서 4주 후 택배로 개별수령한다(방문수령 불가)
- 발급신청 및 문의사항은 02-2290-0162번으로 문의

② 참고

- 모바일 학생증과 기능이 동일하며 모바일 학생증은 즉시 발급 이 가능
- 최초 발급은 무료, 재발급시 발급비용 청구
- 국제학생증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홈페이지의 관련 안내를 참 고바람.

2. 제증명서 발급

우리대학 각종 증명서는 이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가 인터넷발급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 상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 수 수료 결제 후 해당 컴퓨터의 프린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① 발급신청

- 인터넷증명서 발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웹 민원 사이트에 회 원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http://uni.webminwon.com)
- 인터넷증명 발급 중 결제 등 제반 오류사항은 웹민원 콜센 터(1644-2378)로 문의하여야 한다.
- 제출용 증명서는 칼라프린터로 출력할 것을 권장한다.

② 비용

구분	_그 ᆸ 발급수수료		어디디바레니
干正	국문	영문	업무대행비
신청자 비용부담	500원	1,000원	1,000원
발 급통수 와의 관계	발급통수에 따라 수수료 증가		발급통수에 따라 수수료 500원씩 증가

나. FAX 민원신청

FAX 민원증명서 제도는 거주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 등 FAX 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으로 증명서를 FAX로 발급받는 제도이다.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① 신청절차



01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

02

행정기관에서 본교로 신청서를 웹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03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후 FAX로 행정기관에 송부

04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후 민원처리결과수령

② FAX 민원처리 행정기관

- 지방행정기관 : 구청 및 주민센터

③ 비용

구분	발 급수수 료	업무대행비
신청자비용부담	1,000원	300원
발급통수와의 관계	발급종류에 따라 수수료증가	발 급통수 에 따라 수수료증가

예) 재학증명서(국문) 2통과 성적증명서(국문) 1통을 신청한 겨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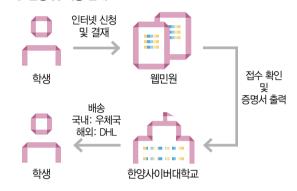
- 발급수수료: 2,000원(1,000원 x 2종류) - 업무처리비: 900원(300원 x 3통) - 총 납부 수수료: 2,900원

다. 방문 및 우편신청

본교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증명서 우편 신청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방문신청: 신청 즉시 발급
- 방문신청가능시간: 월~금 09시~18시 (방학중 10시~17시)
- 본교에는 증명서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및 배송 안내



② 수수료

구분	발급수수료		업무대행비	
十世	국문	영문		
방문신청	1,000원	2,000원	젒음	
우편신청	1,000원	2,000원	1~3통: 2,300원 4~9통: 2,600원 10~20통: 3,300원 해외: 26,500원	

^{*} 방문 신청 시 발급 수수료를 현금 납부

장학제도

본교의 장학제도는 학문 연구의 항학열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시키고자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 1.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생(신 편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장학제도에서 정하는 수혜자격에 해 당되는 학생
 - 나,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 학생으로 인정되는 학생
 - 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라. 재학생(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마.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

2. 교내장학금

가. 성적장학금

1) 지급대상: 정규학기 학과의 학년별 성적상위 3.5% 이내 성적 우수자

2) 지급시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기간

3) 지급방법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성적장학금 지급(등록금 범위내 중복지급)

구분	성적A	성적B	성적C
			1~2등을 제외한
인원	1명	1명	성적상위 3.5%
			이내 인원
금액	1,440,000원	720,000원	432,000원

나. 재단가족장학금

- 1) 지급대상: 학교법인 한양학원 및 한양학원 유관기관 직원 및 배우자, 직계자녀
 -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대학원포함) / 한양의료원
 / 한양여자대학 / 한양공업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사범대
 학부속 중·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
 / 한양여자대학부속 유치원 소속 직원 및 배우자, 직계자녀
 - 한양학원 유관기관: 한양증권주식회사 / 한양개발주식회사 / 백남관광주식회사 소속 정규 직원 본인
- 2) 지급시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기간
- 3) 지급방법 : 등록금범위 내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재단장학 금 지급
- 4) 지급구분 :
 - 학교법인 한양학원 관계자는 수업료 72만원 학비 감면
 - 한양학원 유관기관 정규직원은 43.2만원 학비 감면

다. 학과대표 장학금

1) 지급대상: 학과(부) 학생회장 및 학년별 대표 학생 1명

2) 지급시기: 학기말

3) 지급방법: 학생 계좌로 입금

4) 지급구분: 학과 학생회장 60만원, 학년대표 40만원 지급

라. 총학생회 장학금

1) 지급대상: 해당학기 총학생회장 및 임원

2) 지급시기: 학기말

3) 지급방법: 학생 계좌로 입금

4) 지급구분 : 회장 1인 144만원, 부회장 1인 108만원, 국장 7인 60만원, 부국장 7인 30만원

마 보훈장학금

1) 지급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으로 가정이 빈곤한 자

2) 지급시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기간 (신·편입생은 개강 후 2개월 이내)

3) 지급방법 : 등록금 선감면

4) 지급구분: 보훈청 지급규정에 따름

바. 장애우장학금

1) 지급대상 : 장애우

2) 지급시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기간

3) 지급방법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장애우장학금 지급(등록 금범위 내 중복지급)

4) 지급구분 : 장애 1~3급(중증장애) 수업료의 40%, 장애 4~6 급(경증장애) 수업료의 20%

사 가족장학금

1) 지급대상: 학생 2인 이상 가족이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 중 1명을 제외한 인원

2) 지급시기: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기간 (신편입생은 개강 후 2개월 이내)

3) 지급방법 : 등록금범위내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가족장학 금 지급

4) 지급구분: 수업료 72만원 지급

아. 개나리장학금

1)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소득 4분위 이하인자

2) 지급시기: 학기말

3) 지급방법: 직전 학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인 자 선발 후 지급 (국가장학 반드시 신청 필요, 국가장학 수혜자 제외)

3.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지급하는 기관, 개인, 단체 및 사업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외장학금

1) 지급대상: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사기업체 또는 개인 등(이 하 장학재단으로 칭함)이 지정하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2) 지급시기: 본교가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액을 수령한 후 1 달 이내 3) 지급방법: 수업료를 납부한 후, 대상 학생의 계좌로 입금

4) 지급구분: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전액

나,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

1) 지급대상: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 하인 학생(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2) 지급시기: 한국장학재단 지급일정에 따름

3) 지급방법: 국가장학 우선 신청 이후 수혜금액만큼 수업료 납 부시에 감면(혹은 후지급)

4) 지급구분: 전액 또는 일부(한국 장학재단 시행계획에 따름)

다. 고졸후학습자 장학 (한국장학재단)

1) 지급대상: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고교 졸업자로 재직기간 이 2년 이상인 학생

2) 지급시기: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름 3) 지급방법: 선감면 또는 후지급

4) 지급구분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전액

또는 50% 지원)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학자금대출사업은 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1. 대출신청 안내

STEP. 1 공인인증서 발급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STEP, 2 사업 이용자 등록 후 e-러닝 수강 대출 신청 전 사전 온라인 대출 체험(필수이수과정)

STEP. 3 **학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해서 대출 신청

STEP, 4 증빙 서류 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STEP. 5 심사 결과 확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STEP. 6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u>본인 공인</u>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체결

2. 서류제출

-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확인하여 제출 요함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청 〉서류 제출현황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3. 대출자격

가. 공통(취업후/일반/농어촌학자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신/편입 및 재입학생, 장애인, 졸 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성적 이수자 (신/편입 및 재입학 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인 사람

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인 사람 (소득 분위 무관)

라. 농어촌학자금대출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 드시 농어업 종사자)

4. 대출심사 및 결과 확인

- 신용정보, 성적, 연령, 중복지원 등에 대한 심사 및 소득구간 산정
-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페이지에서 심사결과 확인

5. 약정 체결 및 대출지급 실행

- 대출승인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대출지급 실행(단, 지 정된 기간 내에 대출지급 실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6. 대출금리

- 취업후학자금: 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매학기 고시

- 농어촌학자금 : 무이자

창업지원 안내

1. 창업동아리

- (예비)창업팀의 성과향상을 위한 창업동이리 모집
- 지원자격: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 재학생 3명 이상의 팀
- •지원사항: 창업멘토링, 창업지원금(장학금) 등

2. 멘토스온콜(창업멘토링)

- 전문가 멘토들과 다양한 창업고민(세무, 법률, 지식재산권, 창업준비방법 등)을 해결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
- 대면 또는 비대면(zoom 등) 멘토링 가능
- 반복 신청이 가능하며 멘토링 회당 2시간, 1개월 당 2회 제한

3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 CEO사관학교 한양대학교와 공동운영 중인 대표 창업교육 프로그램
- 매년 9~12월 운영되며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진행
- 수료 시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동문으로 등록 · 관리
- ※ 문의: 창업지원단 02-2220-2872

병무 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재학생으로서 현역병 입영연기 대상자는 만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입영연기대상 제외자
 - 퇴학, 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허가자 제외)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자
- 신/편입생의 경우,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일괄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한다.

처리 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된다.

1) 재학생 입영원 제출

- 대상: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원 제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지방병무청
- 입영(연기, 취소)관련: 입영원 출원 후 취소하고자하는 사람은 소집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연기)원을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취소가능하며,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소집통지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제도 운영
- 지원서 및 안내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2)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 병무민원(병무청): www.mma.go.kr
- 병무민원 자동안내 서비스: 1588-9090(국방국방) 전국공통
- 전국공통 국방부: www.mnd.go.kr
- 육군: www.army.mil.kr
- 해군/해병대: www.navy.mil.kr / www.rokmc.mil.kr
- 공군: www.airforce.mil.kr

2. 민방위 안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함) 및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어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재학생대상, 휴학생은 제외)

1)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관련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을 포함함)

2) 편성 제외자의 신고절차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 서에 관계증명서류(심신장애인은 의사진단서, 전·공상 군· 경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 면·동장에게 신고

▮도서관 이용 안내

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및 ERICA학술정보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출입

학생증 발급 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출입 가능(신분증 및 재학증명 서로는 출입 불가)

- 모바일 학생증도 출입가능

2.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 가,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lib,hanyang,ac,kr)
 - 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 한사대로 〉 바로가기 〉 도서관(서울 또는 ERICA) 클릭
- 나. 최초 로그인: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Password Reset(외부이용 자) 클릭 〉 아이디(학번), 이름 입력 〉 유효아이디 확인 〉 등록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인증 클릭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확 인 클릭 〉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 21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학번 앞자리 HC로 변경하여 사용
 (예: 21123456 → HC123456)
- 다. 최초 로그인 후,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아이디(학번),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하여 이용
- ※ 백남학술정보관 로그인 오류 문의전화 02)2290-0162

3. 대출

백남학술정보관의 모든 자료실 및 분관(의학학술정보관, 법학학술정 보관, 음악자료실)은 개가제로 운영되므로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 접 근 자료를 찾아 각 실에서 대출

- * 개가제: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자료의 내용을 조사하고,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열람방식
-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 후 소장되어 있는 자료 실과 자료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 등 기본 정보를 확인
- 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자료실에서 청구기호를 이용하여 직접 자료 검색
- 다. 1층 대출카운터에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자료를 대출(대리대출 불가)
- 라, 비도서 자료는 1층 전자정보검색실에서 대출
- 마. 대출카운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본인의 대출내역과 반납예정일 등을 직접 확인
- *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 〉
 연락처 수정에서 본인이 직접 휴대폰번호와 E-mail 주소 등록/ 변경

4. 반납

가. 대출한 도서는 백남학술정보관 1층 '반납카운터'에 반납(02-2220-1367)

5. 연체 및 분실

- 가. 대출한 도서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1자료당 1일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 도서 연체 3일째부터 연체료 300원이 발생합니다.(100원, 200원 발생하지 않음)
- 나. 연체 시,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조회 → 연체료 납부 → 결제할 항목 선택 후 '연체료 결제' 버튼 클릭 → 결제방법(휴대폰, 신용 체크카드, 계좌이체) 선택 후 '결제하기 ' 버튼 클릭 → 이후 인터넷 쇼핑 결제화면과 동일하게 진행됨(단, 현금납부 불가)
 - ※ 백남학술정보관 학습지원팀 02)2220-1367(반납 담당)
- 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한 달 전까지 연체료 납부 완료
- 라. 미반납자료 및 연체료(300원 이상)가 있으면 모든 증명서 발급 중지
- 마. 자료를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 학술정보관 규정 제4절의 '변상 및 징계'에 의거하여 처리되므로 다음 각 항을 유의 요망
 -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의 신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서로 변상해야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반납실로 먼저 문의 요망)
 - 1) 국내자료는 국내자료로 국외자료는 국외자료로 변상
 - 2) 복사본이나 영인본은 불가하며, 새 자료로 변상
 - 3) 분실자료와 동일한 주제 또는 유사한 주제의 자료
 - 4) 분실자료의 분량(페이지)과 가격 그 이상의 자료(변상 당시의 환율을 적용)
 - 5) 변상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발행한 자료

한양의료원 이용 안내

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한양대학교 의료원 이용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진료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료비할인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진료비할인의뢰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매학기 말) 내에 언제나 사용 가능하다.

1. 한양대학교의료원 진료 할인 안내

가. 할인 대상자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H로 시작하는 학번의 소유자)
- 재학생. 졸업생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할인 불가 대상

- 제적생. 자퇴생. 시간제 등록생(T로 시작하는 학번의 소유자)

2 대상의료원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홈페이지 안내: https://www.hyumc.com/

3. 할인율

구분	종합검진	장례식장(대실료)	진료비(보험)
본인	20%	30%	외래 및 입원시
직계가족	10%	30%	본인부담액의 10%

- 관련문의 : 사용병원 원무과 및 접수처

4. 진료할인의뢰서 신청안내

- 본인: 한사대로 → 신청 → 기타 → 진료할인의뢰서 신청 → 신청 즉시 출력 가능 → 병원제출
- 직계가족: 한사대로 → 신청 → 기타 → 진료할인의뢰서 신청 →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학교 승인 후 출력 가능 → 병원 제출
- * 신/편입생의 경우 진료할인의뢰서 신청은 학번발급 후부터 가능 합니다.

포상과 징계

1. 포상

포상에는 학업상, 공로상, 모범상, 기타에 의한 포상이 있다.

가 학업상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자와 각 학과(부)에서 최우수한 자.

나. 공로상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다 모범상

교내 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라. 기타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

가. 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1 주일 이내.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근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 1) 교내에서 허가없이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를 한 경우(선거유세 등)
- 2) 교내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임의의 장소 로 이동시킨 경우
- 3) 학교 게시판에 음란물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게시물

게재한 경우

- 4)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나 학우와 관련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을 게재하여 면학분위기를 훼손한 경우
- 5)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경우
- 6) 학교의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 한 경우

다. 유기정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 2)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경우
- 3) 타인의 답안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
- 4) 시험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는 경우
- 5) 학교의 교내외 행사 시 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 6) 교내에서 학우를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경우
- 7) 학교와 관련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아 학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 8) 학교와 관련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학교 단체 메일이나 쪽지 등의 기능으로 무단 발송하여 타인 또는 단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 9) 학교의 방침을 거부하고 학사행정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무기정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 1)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 2) 타인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한 경우
- 3) 타인에게 대리 시험을 응시토록 청탁 또는 강요한 경우

- 4) 시험 문제와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경우
- 5)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공인인증서 포함)
- 6)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7) 학교 시스템(게시판, 동아리 등) 내에서 학교가 허가하지 않은 정치단체를 조직하여 집회를 주도한 경우
- 8) 교내에서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경우
- 9) 학교과 관련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경우
- 10) 본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 11)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본교 서버 및 홈페이지에 접근 한 경우
- 12) 불필요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여 학사 행정을 방해한 경우

마. 퇴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 1)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 2) 징역 이상의 형사 처벌로 면학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고 학교 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3) 학교와 관련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 목적의 내용 을 게재 또는 유포한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5)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교 서버 및 홈페이지에 접근 하여 시스템, DB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 6) 해킹 등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추출, 배포한 경우
- 7) 학생회비 및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학생준칙

제1장 학생증

제1조 (학생증 교부)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휴대)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도서열람실의 출입을 금한다.

제3조 (대여 및 변조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학생증을 변조할 수 없다.

제4조 (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학생지원팀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재교부 시 소정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1. 22, 2018. 08, 28〉

제5조 (폐기) 학생증은 졸업, 퇴학,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행처에 즉시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2장 집회, 결사, 광고, 간행물 배포 및 게시

제6조 (집회 및 결사)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광고, 간행물 배포 및 게시) 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이 광고,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2, 03, 21, 2018, 08, 28〉

② 타 대학 교내에 전항과 같은 사항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집회 결사의 해산, 등록취소 및 징계)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교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산하고 관계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9조 (학생단체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학생단체의 활동계획서 및 전 학기 활동보고서를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대표학생은 학생지원 처장에게,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03, 21, 2018, 08, 28〉

제10조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경비 운용)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연간, 월간계획서 및 결산서(학기별 감사자료)는 총학생회장은 학생지원처 장에게,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03, 21, 2018, 08, 28〉

- ②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경비지출은 총학생회장은 학생지원처장에게,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03, 21, 2018, 08, 28〉
- ③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신임 총학생회장은 시설관리동의서와 회계관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12, 29〉

제3장 휴학, 복교 및 퇴학

제11조 (일반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휴학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휴학신청 기간내에 대학에 제출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일반 휴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2. 질병 휴학자의 경우: 4주 이상 병원 진단서
- 3. 도서관 책 반납 및 연체비 완납 확인서

제12조 (입대휴학)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대일의 해당학기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03, 21〉

- 1. 입대 휴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2. 입대 영장 또는 복무확인서(시·군·읍·면장 또는 소속 부대장 발행) 3. 도서관 책 반납 및 연체비 완납 확인서

제13조 (휴학내용변경) 전 제11조에 의하여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 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일반휴학인정서를 추가 첨부하여 전 제12조에 의한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자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본교 소정 양식)을 제출하여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개강전 복학 신청 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에 제출하여 소속 학과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복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제4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6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상이하여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 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 양식의 정정원을 해당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1. 22〉

부 칙

- (1)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2) (시행일) 이 준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08. 28)

(1) (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 _ 한양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한양사이버대학교(www.hycu.ac.kr)안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② 재학생이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다.
- ③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총학생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손상시켜 회원으로서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피선 거권은 총학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한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 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하며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다.

제7조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중앙운영회, 중 앙집행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학과(부)학생회로 구성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학교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④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당국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학생총회는 회원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2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①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 ② 총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본회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제13조 (회의) 학생총회의 회의는 한양사이버대학교(www.hycu.ac.kr) 내에서 온라인을 투표를 통하여 회의를 발의하고 회의 형식은 대면 또 는 비대면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제14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청원게시판을 통한 안건의 찬성투표가 1/100인 경우
- ② 의장은 전항의 각호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소집일 을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즉 시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각호에 의한 총회소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당사자가 직접 소 집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학생총회의 개회는 회의소집일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등교생 보이기에 게시되는 전체학생 수에서 휴학생 수를 차감한 학생수의 1/10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 유효하며, 회의의 의결은 최다득표의 안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 부 총학생회장

제16조 (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각 집행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총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 및 집행부국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 ⑤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을 집행한다.
- ⑥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⑦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 (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중앙집 행위원회를 총괄하고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제18조(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직무) ①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각 집행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 및 집행부국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⑤ 학생총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관하여 중앙집행운영위원회의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는다.

제19조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 한다. 다만, 자진사퇴, 총학생회장의 탄핵, 회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가 정지 된다.

제20조 (선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 법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1조 (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및 회원자격 상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2조 (권한대행)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탄핵, 사퇴, 직무정지) 시에는 중 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3조 (탄핵) ① 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은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 ③ 감사위원회위원 전원발의
- ④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⑤ 탄핵안에 대한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⑥ 탄핵안이 발의했을 경우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탄핵안의 발의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 ⑦ 탄핵안의 가결 시 탄핵대상은 해임되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이 모두 해임되었을 경우 새로운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선출 시까지 중앙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4조 (목적)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요정책 결정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권리보장)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학과(부)의 학생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본회 의사결정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학과(부) 학생회장 중 직전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 ② 각 학과(부)대의원 1명 (단, 직전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각 학과 (부) 학생회장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 등록된 대의원에 한함.)
- ② 각 학과(부) 회장의 궐위시 학과 회칙에 따라 각 학과(부) 회장의 중앙 운영위원으로서의 권리를 위임받는다.
-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학교에 요청하여 총학생회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중앙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 (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 는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회의 전 5일 이전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소집 및 회의방법(대면 또는 비대면)을 공고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 소 집 통보는 온라인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및 집행국장, 감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다.

- ②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③ 예산 ·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 ④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을 건의한다.
- ⑤ 집행국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권한을 가진다.
- ⑥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⑦ 본회의 회비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⑧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게 중앙집행위 원회 관련 집행국 서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괴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는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이 위원회 소집에 연속 2회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위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수에서 차감한다. 단, 본인이 소명기회를 요구할 경우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자격 여부를 의결로 최종결정한다.

제31조 (회의비) 총학생회장은 매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 중앙집행위원, 중앙감사위원에게회의참석 비용(교통비)으로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제5장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3조 (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집행국을 설치하고, 사업방향에 맞는 부서업무를 수행한다. 각 부서 명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 시 변경가능하다.

- 1. 행사국(문화행사국)
- 2. 기획국(정책기획국)
- 3. 대.내외 협력국
- 4. 회계국(재정기획국)
- 5. 홍보국(홍보관리국)
- 6. 복지국(복지지원국)
- 7. 행정국(행정지원국)
- 8. 지역국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게 있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④ 집행국의 체계는 총학생회 준비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중앙운영위원 회가 인준한다.

- ⑤ 집행국은 각 집행국 두어 각1~3명의 국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⑥ 집행국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임면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주하다.
- ⑦ 각 집행국의 임기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⑧ 집행국의 임원은 직전 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중 선출한다.

제34조 (업무 및 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집행업부 전반에 대한 정보의 알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의무)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6장 중앙감사위원회

제36조 (지위) 중앙감사위원회는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운영의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37조 (구성) ① 중앙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1인 감사위원4인 총 5 인이내로 구성한다.

- ② 중앙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소속 학과(부)를 제외하고 각 학과(부) 회장의 추천을 받아 5인 이하로 조직하며, 6인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한다.
-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38조 (회계감사) ① 중앙감사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중앙운영위원 장이 중앙감사위원장에게 추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는 매 분기 말(3, 6, 9, 12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 하여야한다.(단, 익년 1월에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 익년 1월 말에추가감사를 실시한다)
- 2/1 ~ 3/31 종료 후 4/15 감사
- − 4/1 ~ 6/30 종료 후 7/15 감사
- $-7/1 \sim 9/30$ 종료 후 10/15 감사
- 10/1 \sim 12/31 종료 후 1/15 감사
- 1/1 ∼ 1/31 종료 후 1/31 감사
- ③ 중앙감사위원별 감사업무의 분담은 중앙감사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9조 (의결) 중앙감시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는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제7장 학과(부) 학생회

제40조 (지위) 학과(부) 학생회는 각 학과(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41조 (구성) 각 학과(부)에서는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회칙의 제정) 각 학과(부) 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 (학과(부) 학생회장) 해당 학과(부)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학과(부) 학생회장은 당해 학과(부)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중앙운 영위원이 된다.

제44조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45조 (회칙) 각 학과(부)의 회칙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회칙을 준수한다.

제8장 재정

제46조 (경비) ①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찬조금, 학교 지 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학교지원금과 보조금 및 찬조금 수입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47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2만원으로 하고 납부는 자율 납부하며 수납한 회비의 1/2은 각학과(부) 학생회의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② 빅페스티벌, 엠티 지원금은 1학기에 한하여 학과 지급 학생회비의 5%를 지급하고 단, 지원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으로 일괄지급한다.
- ③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그 인출은 총학생회장.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 집행한다.
- ④ 본회의 회비는 승인된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 (경비의 관리)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제49조 (회계년도) 본회의 예산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하며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로 한다.

제50조 (예산) ① 총학생회장은 매년 2월 15일이내에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한다.

- ②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전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1조 (추가 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 앙운영위원회 재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선거

제52조 (선거규정)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53조 (발의) ①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
- 2. 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3. 총학생회장의 발의
-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54조 (회칙개정절차) 회칙개정을 발의하는 자는 아래의 개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총학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 (7일간)
- ② 공청회개최
- ③ 회칙개정안 발의
- ④ 개정 발의 안 공고 (7일간)
- ⑤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 ⑥ 회칙개정공포

제55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순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항) 이 회칙 시행 당시 본회의 모든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3조 (회칙의 운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 및 제 민주단 체의 회칙·관례에 따른다.

부칙제 2008-001호(2008년 5월 14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이전 시행에 대하여 모든 사항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 2009-001호(2009년 2월 25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이전 시행에 대하여 모든 사항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 2009-002호(2009년 7월 22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이전 시행에 대하여 모든 사항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 2012-001호(2012년 11월 22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이전 시행에 대하여 모든 사항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 2019-001호(2019년 10월 20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이전 시행에 대하여 모든 사항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 2021-001호(2021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항) 이 회칙 개정이전 시행에 대하여 모든 사항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별 칙

- 1.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2.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 3. 게시판 운영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동아리

동이리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취미 생활이나, 종교, 특기, 과외 학습 등을 충족시키며, 동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발적 단체를 동아리라 하며, 중앙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누어 진다.

중앙 동아리는 정규 등록 절차를 거쳐 대학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 단체이며, 자율 동아리는 아무런 규정 없이 자유롭게 신설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율 단체를 의미한다.

본교 2021년도 중앙동아리별 활동 이념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중앙동아리 등록현황

번호	분류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및 목적	설립년월
1	학문/연구	망치모터스	한국자동차공학회 주관,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출전을 목표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들이 모여 제작, 정비 실습을 수행한다.	2015,12.
2	작군/ 근T	미래복지포럼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재학생, 졸업생들의 인적교류와 학술활동, 진로 지도, 봉사, 실습, 취업경험 등을 공유한다.	2018,03
3	· 문화예술	NID	디자인, 인문학, 여행 특강 동아리디자인 역량 향상을 위한 인문학과의 융합·복합 탐구한다.	2003,04
4	<u> </u>	SND	기초적인 드로잉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을 배운다.	2006,05
5	· 취미/오락	소소하지만 꾸준한 콘텐츠 업로드-소꿉	초보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개인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창작활동과 연계, 유의미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2020,03
6] 커마/포릭	한양골프클럽	골프 취미 활동을 통해 학우들의 화합과 학교발전기금 기부 등을 통해 자부심과 학교의 명예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02,01
7	친목/동년배 장애학우와 비장애학우가 함께하는 한사인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장애 유무를 떠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보 교류와 친목도모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2007,11
8	기타(봉사) 복지현장탐방 국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탐방하며, 사회복지 정보 공유 및 예비사회복지사 기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한다.		2008,04	

교내전화번호

● 대표번호 (02)2290-0114 평일 09:00 ~ 18:00 (점심 시간: 12:00 ~ 13:00)

- 입학문의 전화 (02)2290-0082
- 원격지원센터 (02) 2290-0119
 (연중무휴 상담 08:00 ~ 22:00)

• 학과사무실

기계자동차공학부	02)2290-0840	법·공무행정학과	02)2290-0830
건축도시건설공학부	02)2290-0860	보건행정학과	02)2290-0810
전기전자통신공학부	02)2290-0310	부동산학과	02)2290-0370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02)2290-0870	사회복지학과	02)2290-0400
컴퓨터공학과	02)2290-0300	실버산업학과	02)2290-0410
해킹보안학과	02)2290-0850	아동학과	02)2290-0350
경영정보·AI 비즈니스학과	02)2290-0434	플랫폼교육공학과	02)2290-0320
글로벌경영학과	02)2290-0435	군경상담학과	02)2290-0511
마케팅학과	02)2290-0438	미술치료학과	02)2290-0820
생산물류유통학과	02)2290-0439	상담심리학과	02)2290-0360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02)2290-0445	청소년코칭상담학과	02)2290-0340
재무·회계·세무학과	02)2290-0420	영어학과	02)2290-0330
관광항공경영학과	02)2290-0450	일본어학과	02)2290-0800
호텔외식경영학과	02)2290-0458	디자인학부	02)2290-0460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02)2290-0490	교양	02)2290-0489
광고미디어학과	02)2290-0440	학과공통 FAX	02)2290-0600~5

• 학사행정 및 서비스

서비스 및 안내	부서	교내전화번호
학적변동(휴·복학/자퇴/재입학/전과)		02-2290-0023
수강신청, 수강포기, 학점포기, 학점교류	학사팀	02-2290-0018~9
졸업, 부·복수전공		02-2290-0017
학습(강의수강)	AMTINE	02-2290-0044
 시험, 성적	수업지원팀	02-2290-0043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재무회계팀	02-2290-0123
교내장학, 학자금대출		02-2290-0164
교외장학, 국가장학, 발전기금	학생지원팀	02-2290-0163
학생증발급, 도서관이용, 한양의료원 할인		02-2290-0162
동아리, 병무, 장애학생지원, 해외탐방프로그램		02-2290-0165
멘토링 프로그램		02-2290-0093
증명서 발급		02-2290-0092
산업체위탁 체결	홍보미디어팀	02-2290-0072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02-2290-0271
메일	차세대시스템사업단	02-2290-0205
홈페이지 장애	원격지원센터	02-2290-0119

